

1995年度 光州廣域市西區 歲入・歲出決算  
審 查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995年度 光州廣域市西區 歲入・歲出決算 審 查 報 告 書

1996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審查經過

- 가. 제출일자 : 1996년 8월 28일
- 나.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1996년 12월 6일
- 라. 상정일자 : 제61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6.12.14)상정,  
제안설명,결산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  
검토보고,질의답변,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會計課長 鄭 玉 鉉)

#### ○ 결산 총규모

- 세입예산 현액은 691억 6,509만 4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769억 6,358만 9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758억 2,429만 9천원에 대해 599억 3,932만 8천원이 집행되었음.

- 2 -

○ 일반회계 결산

· 세입예산 현액은 607억 3,598만 9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83억 8,577만원으로 112.6%의 실적을 올렸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 지방세 수입	111억 5,856만 4천원
- 세외수입	202억 4,975만 4천원
- 지방교부세	192억 8,729만 9천원
- 보조금	149억 2,984만 4천원
- 지정재원	27억 6,030만 9천원임.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3억 9,519만 4천의 79.4%인 534억 8,155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 의회비가	8억 2,448만 3천원
- 일반행정비가	231억 4,041만 7천원
- 사회복지비가	170억 6,600만 1천원
- 산업경제비가	6억 6,970만 3천원
- 지역개발비가	104억 3,917만 3천원
- 문화 및 체육비가	4억 8,656만 2천원
- 민방위비가	5,783만 5천원
- 지원 및 기타경비가	7억 9,737만 7천원임.

· 95년도 세계잉여금은 170억 2,426만 1천원으로 그 내역은,

- 명사이월비가 21건에 41억 1,837만 3천원
- 사고이월비가 21건에 27억 8,425만 1천원
-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8,386만 7천원
- 순세계잉여금이 75억 1,772만 5천원임.

○ 특별회계 결산

· 의료보호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76억 1,538만 1천원의 115.3%인 87억 8,029만 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 세출은 예산현액 86억 5,547만 7천원의 95.9%인 73억 201만 7천원을 집행하였음.

○ 채권 및 채무 결산

· 9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7억 5,427만 5천원이었으며 95년도에 2억 8,124만 5천원이 감소하여 9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억 7,303만원임.

· 9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51억 7,368만 3천원이었으나 95년도에 17억 729만 7천원이 줄어들어 9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4억 6,638만 6천원임.

- 4 -

○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 9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04억 2,757만원이었으나 95년도에 2,101억 906만 3천원이 증가하여 95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은 2,505억 3,663만 3천원으로,

- 행정재산이 2,482억 882만 2천원
- 잡종재산이 23억 2,781만 1천원이며

· 9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91종에 24억 9,771만 6천원이었으나 95년도에 203개 품종에 4억 6,628만 1천원이 감소하여 20억 3,143만 5천원임.

3. 決算檢査結果 措置內譯 報告要旨

: 덧붙임 1

4.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 덧붙임 2

5. 質疑·答辯要旨

: 생략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7.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

<별첨 1> **決算檢査結果指摘事項措置計劃報告要旨**  
(보고자 : 회계과장 정 옥 현)

지 적 사 항	추진 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b>1. 세입결산 검토</b></p> <p>가. 남구청분구로 95년도에 실제 수납액은 전기대비 0.7%가 하락하고 미수납금액도 전기대비 182,591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차후 수납을 제고 및 미수납액 회수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방안</p> <p>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수납 비율이 전기대비 약 10%가 하락되었는바, 수납을 제고에 대한 조속한 방안</p>	<p>○ 지방세 부과시 수납실적 향상을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납기내 징수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미수납된 지방세는 강력히 징수 자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p> <p>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체납자의 재산 및 소재 파악에 주력하여 부동산 및 차량 등을 압류하고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봉급, 예금계좌 압류, 형사고발을 통한 채권확보에 전 행정력을 경주 미수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자주자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p> <p>○ 징수 독려반(4개반 12명)을 편성 운영하여 '90 ~ '95년도 총미수액 1,171,121천원 중 151,780천원(13%)을 '96. 10월말까지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지방세과</p> <p>지역교통과</p>

- 6 -

지 적 사 항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b>2. 세출결산 검토</b></p> <p>○ '95년도 결산시 '94년도와 비교하여 불용액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합리적인 집행방안</p>	<p>○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94년도에서 '95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비 5억원을 집행할 수 없어 불용처리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3월 남구 분구로 인하여 사고이월 예산으로 이체 정리하여야 할 월산3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6억 2천만원등 지역개발사업비의 예산 정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p> <p>○ 앞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원인을 충분히 분석하여 추정 등을 통해 정리하겠으며,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재정전망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국·시비보조금, 투자사업등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음.</p>	<p>각 실 과 (기획감사실)</p>

지 적 사 항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b>3. 계속비 검토</b></p> <p>○ 공동주택건설 특별회계의 양3동 발산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계속비 규정이 적용되는 예산으로서 익년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세입예산 금액에 포함시킴으로서 '93년 회계연도부터 누계금액 855,515천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의 당해 연도 집행잔액은 계속비로서 익년도로 이월시켜야 하나 '95 회계연도 50,729천원 포함, '92 회계연도부터 누계금액 209,269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어 있어 전년도 세출결산서상 익년도 이월액 금액과 다음연도 세출결산서상 전년도 이월액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p>	<p>○ 지방재정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하나</p> <p>○ 구청에서 계속사업을 처음 시행하였기 업무상 착오가 있었으며</p> <p>○ 계속사업비는 공사완공 연도에 정산조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양동 아파트 건설공사가 '96. 6. 30 완공되어 정산조치되었음.</p>	<p>건설과</p>

지 적 사 항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b>4. 예산편성및예산집행</b></p> <p>가. 청소년수련관(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연구자문 실시비는 가정복지과(청소년계)의 예산과목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타 부서(기획관리-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제도의 추지에 어긋난 행위임.</p>	<p>○ 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94년도에 건립계획을 세웠으나 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미루어 오던 중</p> <p>○ '95. 11. 28 상무 신도심 5·18 기념공원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95. 12. 28 신축설계용역을 계약하였음.</p> <p>○ 신축설계에 필요한 건축 및 시설 규모등 과업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여 '95. 12. 27일 5·18기념사업 연구단에 청소년 수련관 기능과 운영프로그램 자문을 의뢰한 바, 사전에 예산을 확보치 못해 기획관리 - 일반수용비(지역발전자문위원회 자문수수료)에서 집행하게 되었음.</p>	<p>기획감사실</p>

지 적 사 항	추진 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나. '95 회계연도중 집행부서의 세출 예산이 의회운영비로 4건에 4,035천원이 예산 재배정되었는데 부서간에 예산 재배정은 예산집행을 문란케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항목은 예산편성시 적절히 반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은 편성지침에 외거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항별로 세출 예산을 집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에도</li> <li>○ 의회운영비로 재배정하여 집행한 4,035천원은 예산편성 및 운영이 적법치 못하였음은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안입니다.</li> <li>○ 이후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li> </ul>	<p>기획감사실</p>
<p>다. 주차장특별회계 기타 교통사업수입중 '95년 결산서상 잠수입의 세입 장수 결정액중 전년도 과태료 미수납액은 797,200천원인 바 '94년도 결산서상 과태료 미수납액은 402,840천원 으로 전년도의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 394,360천원이 '95년 세입에 추가계상 되었음을 예산편성 및 결산에 신중을 기하지 못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예산편성 및 결산에 있어 세심한 검토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음.</li> </ul>	<p>지역교통과</p>

- 10 -

지 적 사 항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라. 청소사업비 쓰레기 처리 연구 개발비 56,670천원은 '94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인 바 '95년도에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은 세출결의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짐.</p>	<p>○ '94 ~ '95년까지 위생매립장내 소각로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60,000천원 예산액중 사고이월액 56,670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는</p> <p>○ '93년도부터 쓰레기매립장을 안정적으로 확보코자 현 남구 송암동 도동계에 위생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코자 '94. 9. 24. 금호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해 왔으나 '95. 3. 1.자로 남구 분구로 인해 매립장 관련일체 사업을 남구청으로 이관하였음.</p> <p>○ 사업을 인계받은 남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사업비를 이체코자 하였으나, '95. 12월 현재 덕남 정수장등 주변 환경 저해요인으로 중단상태 있다는 통보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음.</p>	<p>청소행정과</p>

지 적 사 항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마. 새마을 용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여 별도 운영해야 되나 일반회계에 편성관리하여 자금 관리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못해 고유 목적 사업에 활용치 못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p>	<p>○ 새마을 용자금은 '96. 1. 18 조례 제359호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p>	<p>사회복지과</p>						
<p>5. 기금결산 검토</p> <p>가. 당해 연도말('95년) 현재액의 자산합계 633,685,000원과 부채 및 자본합계 553,685,000원과 차이금 80,000,000원이 발생한 사유</p>	<p>○ 당해 연도말('95년) 현재의 자산합계 633,685,000원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553,685,000원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출연금) 80,000,000원을 합산 관리하여 차이가 발생하였음.</p> <table border="1" data-bbox="772 2110 1528 2326"> <thead> <tr> <th>기 금 별</th> <th>자 산 액</th> </tr> </thead> <tbody> <tr> <td>영세민생활안정기금</td> <td>553,685,000원</td> </tr> <tr> <td>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td> <td>80,000,000원</td> </tr> </tbody> </table> <p>※ '96.10.16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을 분리하여 기금관리</p>	기 금 별	자 산 액	영세민생활안정기금	553,685,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80,000,000원	<p>사회복지과</p>
기 금 별	자 산 액							
영세민생활안정기금	553,685,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80,000,000원							

- 12 -

지 적 사 항	추진 계획 및 향후 대책	주관부서
<p>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94년 결산서상 연도말 잔액 135,706,871원과 '95년 결산서상 이월잔액 55,706,871원의 차이금 80,000,000원이 발생한 사유</p>	<p>○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94년 결산서상 당해 연도말 잔액 135,706,871원과 '95년도 결산서상 이월잔액 55,706,871원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은 '94년도 결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80,000,000원이 합산되어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음.</p>	<p>사회복지과</p>
<p><b>6. 공사발주현황 검토</b></p> <p>○ 입찰 참가수가 적은 지명 경쟁분 공사에서 상대적으로 낙찰비율이 높은 바 업무진행에 철저한 관리통제를 통하여 예산집행에 낭비요소가 없었는지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 제한경쟁계약이란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기술보유 정도 등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시키는 제도로써 일반경쟁과 지명경쟁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으나, 사업부서에 의뢰해 온 50,000천원 이상 입찰공사의 설계서 및 의견서를 검토후 주공정 건설업 면허소지 업체와 설계서상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에 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여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므로 소수 업체가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낙찰비율이 높은 바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여 다수 입찰자가 참가하여 예산집행에 낭비요소가 없도록 업무진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p>	<p>회 계 과</p>

<별첨 2>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서대석)

**I. 1995年度 會計年度 決算概要**

**1. 總括**

**[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계	69,165,094,000	75,824,299,000	76,963,589,303	59,939,328,216	17,024,261,087
일반회계	60,735,989,000	67,395,194,000	68,385,770,584	53,481,553,113	14,904,217,471
특별회계	8,429,105,000	8,429,105,000	8,577,818,719	6,457,775,103	2,120,043,616

**[ 세계잉여금 현황 ]**

회계별	세계잉여금	잉여금내역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합계	17,024,261,087	4,118,373,000	2,816,641,000	669,530,339	483,867,700	8,935,849,048
일반회계	14,904,217,471	4,118,373,000	2,784,251,000	-	-	7,517,725,771
특별회계	2,120,043,616	-	32,390,000	669,530,339	-	1,418,123,277

- 1995년도 광주광역시서구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758억 2,499만 9천원에 대하여 세입은 101.5%인 769억 6,358만 9천원이며,
- 세출은 예산현액의 79.05%인 599억 3,932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70억 2,426만 1천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9억 3,584만 9천원이 발생하였음.
- 순세계잉여금 증액은 남구 분구에 따른 이체금 14억 3,976만 2천원이 포함된 것임.

## 2.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미수납액			증감 (B-A)
				계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합계	69,165,094	79,458,315	76,963,589	2,494,726	100,066	2,394,659	10,293,221
일반회계	60,735,989	69,559,450	68,385,770	1,173,680	100,066	1,073,613	8,823,461
특별회계	8,429,105	9,898,864	8,577,418	1,321,046	-	1,321,046	1,469,759

-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를 합한 1995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91억 6,509만 4천원에 대하여 794억 5,831만 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6.9%인 769억 6,358만 9천원을 수납하였으며, 24억 9,472만 6천원을 미수납하였음.

### □ 일반회계

#### [ 19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계	60,735,989	69,559,450	68,385,770	1,173,680	100,066	1,073,613
지방세	9,919,387	11,671,045	11,158,564	512,481	47,770	464,710
세외수입	12,856,087	20,869,848	20,249,754	620,094	52,296	567,798
지방교부세	19,287,299	19,287,299	19,287,299	-	-	-
보조금	15,196,110	14,929,844	14,929,844	-	-	-
지정재원	3,477,106	2,801,413	2,760,309	41,104	-	41,104

-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607억 3,598만 9천원에 대하여 695억 5,945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중 98.3%인 683억 8,577만원을 수납하였음.

- 일반회계에서 88억 2,346만 1천원이 초과징수 결정되었는  
바, 지방세에서 17억 5,165만 8천원,세외수입에서 80억  
1,376만 1천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지정재원에서 6억  
7,569만 3천원이 줄어든데 따른 것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7%에 해당하는 11억 7,368만  
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43.7%를 차지하는 5억 1,248만 1천  
원,세외수입이 52.8%인 6억 2,009만 4천원으로 미수납액  
의 대부분을 주로 과년도수입과 과태료 수입이 차지하고  
있음.

[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

(단위 : 천원)

과 목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무 재 산	거 소 불 명	시 효 소 멸
합 계	100,066	24,429	57,377	18,260
지 방 세	47,770	13,220	25,539	9,011
세외수입	52,296	11,209	31,838	9,249

- 불납결손액은 미수납액 11억 7,368만원에 대하여 8.5%인  
1억 6만 6천원이며, 이중 무재산인 경우가 2,442만 9천원,  
거소불명이 5,737만 7천원,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이  
1,826만원임.

- 16 -

## [ 미수납사유별 현황 ]

(단위 : 천원)

과 목	미수납액	사 유 별		
		채무자거소불명	재력부족	재산압류중
합 계	1,073,614	430,837	245,113	397,664
지방세수입	464,710	135,640	73,613	255,457
세외수입	567,799	268,200	157,392	142,207
지정재원	41,105	26,997	14,108	-

○ 미수납액 사유는 채무자거소불명이 40.13%인 4억 3,083만 7천원, 재력부족이 22.8%인 2억 4,511만 3천원, 재산압류 중인 경우가 37.0%인 3억 9,766만 4천원을 차지하고 있음.

## □ 특별회계

○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4억 2,910만 5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7.4%인 98억 9,886만 4천원이고, 수납액은 86.7%인 85억 7,781만 8천원임.

○ 미수납액은 15.4%인 13억 2,104만 6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없음.

### 3. 세 출 결 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익년도이월액	불 용 액
합 계	69,165,094	75,824,299	59,939,328	7,604,544	8,280,426
일반회계	60,735,989	67,395,194	53,481,553	6,902,624	7,011,016
특별회계	8,429,105	8,429,105	6,457,775	701,920	1,269,409

○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를 합한 1995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58억 2,429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9억 3,932만 8천원으로 79.1%가 집행되었고, 158억 8,497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는 다음연도 이월액 76억 454만 4천원과 불용액 82억 8,042만 6천원임.

□ 일 반 회 계

#### [ 199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불 용 액
합 계	60,735,989	67,395,194	53,481,553	6,902,624	7,011,016
의 회 비	900,215	900,215	824,483	0	75,731
일반행정비	25,400,711	25,775,325	23,140,417	892,054	1,742,853
사회복지비	19,020,484	20,801,844	17,066,001	1,964,597	1,771,245
산업경제비	678,146	678,146	669,703	0	8,442
지역개발비	12,406,368	16,985,815	10,439,173	4,045,973	2,500,668
문화체육비	507,664	507,664	486,562	0	21,101
민방위비	80,346	80,346	57,835	0	22,510
지원기타경비	1,742,055	1,665,838	797,377	0	868,461

- 18 -

-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673억 9,519만 4천원에 대하여 79.4%인 534억 8,155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69억 262만 4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70억 1,101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원인을 보면
  - 계획변경 취소로 1억 3,746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으로 14억 8,382만 9천원
  - 예산절감으로 17억 1,830만 5천원
  - 예산집행잔액으로 32억 1,469만 8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 8,386만 8천원임.

○ 불용액 70억 1,101만 7천원은 예산현액의 10.4%를 차지하고 있음.

□ 특 별 회 계

[ 1995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불 용 액
계	8,429,105	8,429,105	6,457,775	701,920	1,269,409
의료보호특별회계	2,265,756	2,265,756	2,264,557	0	1,198
공동주택건설특별회계	4,279,388	4,279,388	3,559,128	669,530	50,729
주차장특별회계	1,883,961	1,883,961	634,089	32,390	1,217,481

○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4억 2,910만 5천원에 대하여 76.6%인 64억 5,777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7억 192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12억 6,940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불용액 12억 6,940만 9천원은 예산현액 84억 2,910만 5천원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시설 관련 토지매입 및 시설비 등 관련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관련사업비 12억 19만 1천원이 불용처리된데 의한 것임.

4.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예산의 이용 · 전용은 없음.
- 1995년 3월 1일자로 남구가 분구됨에 따라 예산회계법 제 36조 2항과 3항에 의거,이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14억 3,976만 2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함.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합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3	6,935,014	21	4,118,373	22	2,816,641
일반회계	42	6,902,624	21	4,118,373	21	2,784,251
특별회계	1	32,390	-	-	1	32,390

-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한 금액은 예산현액 758억 2,429만 9천원의 9.15%인 69억 3,501만 4천원임.

- 20 -

## 6. 계 속 비

- 1995 회계연도 계속비 집행은 1건으로 양3동 발산지구 공동주택건설에 의한 것임.
- 총사업비 151억 6,435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은 42억 7,938만 8천원, 지출액은 35억 5,912만 8천원, 불용액은 5,072만 9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6억 6,953만원임.

## 7. 채무부담행위

-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쌍촌우회하수도공사(2차) 사업 1건에 5억원임.

## 8. 예 비 비

- 19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 6,699만 2천원으로 봉선동 분동 대비사업의 1건에 8,077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7,621만 6천원을 지출하고 6억 9,077만 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9. 채권·채무결산

가. 채 권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년도발생액	당해년도상환소멸액	당해년도말현재액
합 계	754,275	132,116	413,361	473,030
일반회계	589,742	108,000	293,242	404,500
특별회계	164,533	24,116	120,119	68,530

○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억 5,427만 5천원이었으나, 당해년도에 2억 8,124만 5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7,303만원임.

나. 채 무

[ 회 계 별 현 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현재액 (A+B)
		계 (B)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합 계	5,173,683	△ 1,707,297	500,000	2,207,297	3,466,386
일반회계	5,173,683	△ 1,707,297	500,000	2,207,297	3,466,386

- 22 -

## [ 종류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
		계 (B)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합 계	5,173,683	△ 1,707,297	500,000	2,207,297	3,466,386
차 입 금	5,173,683	△ 2,207,297	-	2,207,297	2,966,386
채무부담행위	-	500,000	500,000	-	500,000

-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51억 7,368만 3천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7억 729만 7천원이 줄어들어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34억 6,638만 6천원임.

## 10. 재산 및 물품 결산

## 가.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현재액
		증	감	
합 계	40,427,570	237,219,921	27,110,858	250,536,633
행정재산	40,174,712	234,498,507	26,464,397	248,208,822
보존재산	-	-	-	-
잡종재산	252,858	2,721,414	646,461	2,327,811

-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04억 2,757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2,101억 906만 3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05억 3,663만 3천원임.

나. 물 품

-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91 품종에 24억 9,771만 6천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203 품종에 4억 6,628만 1천원이 감소하여 20억 3,143만 5천원임.

- 24 -

## II. 검토 의견

○ 1995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수추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입니다.

### < 지방세 수입의 연도별 예산대비 실적비교 >

<표 1>

(단위 : 원)

년 도	예 산 액(A)	징수결정액(B)	실제수납액(C)	미수납액(D)	미수납처리액	
					결손처분(E)	익년도이월(F)
93년도	10,727,000,000	11,888,793,640	10,926,574,710	962,218,930	209,269,020	752,949,910
94년도	12,824,000,000	14,540,436,890	13,664,566,800	875,870,090	97,460,570	778,409,520
95년도	9,919,387,000	11,671,045,230	11,158,564,020	512,481,210	47,770,610	464,710,600

(단위 : %)

연도별	A / B	A / C	C / D	D / E	D / F
93년도	110.8	101.9	8.8	21.7	78.3
94년도	113.4	106.6	6.4	11.1	88.9
95년도	117.7	112.5	4.6	9.3	90.7

-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도 예산대비 지방세징수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의 경우 당초예산대비 112.5%(12억4천만원)를 초과한 지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예산편성 관행상 먼저 세출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라도 균형예산을 만들기 위해 세입규모를 이에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어 독자적으로 세수추계치가 산출되더라도 세출규모에 맞추어 축소·조정되는 경향에 의한 것과 익년도 덧붙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추계가 예산규모, 나아가 주민의 조세부담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만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의회차원에서도 예산심의시 세수추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은 세금에 대한 주민의 의식제고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결손처분율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세금징수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나 익년도 이월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당해 연도에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6 -

- 특히 불납결손의 주된 요인은 납세자의 부담능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의 증가는 사업 부진 등에 편승하여 납세의무를 기피하는 선례를 남겨 선량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고 세무행정의 기강을 헤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징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아울러 채납자 개인별로 생활상태, 재산보유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납부가능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분할납부 등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계속 납부거부시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 징수토록 해야 할 것이며, 무재산·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장기채납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분 등 적절한 조치로 미수납액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세계잉여금의 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연도별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표 2>

(단위 : 원)

년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93년도	81,129,096,383	67,035,413,560	3,620,953,000	3,603,675,130	-	1,289,931,310	5,579,123,383
94년도	94,799,568,759	77,459,671,990	3,551,631,000	4,763,742,230	710,527,808	710,090,200	7,603,906,531
95년도	76,963,589,303	59,939,328,216	4,118,373,000	2,816,641,000	669,530,339	483,867,700	8,935,849,048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현황을 보면 세입재원으로 처리된 순잉여금의 대부분이 다음연도 덧붙임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세입예산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세계잉여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잉여금의 운영에 있어 다음연도 또는 다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그해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다음연도 덧붙임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의 재원이 유향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95년도 남구 분구에 따른 14억 3,976만 2,560원은 이체 처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은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 28 -

셋째,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연도별 결산액 대비 인건비 및 물건비 비율>

<표 3>

(단위 : 원)

연도별	결산액	인건비 (결산대비율)	물건비 (결산대비율)
93년도	67,035,413,560	13,691,667,420(20.4%)	8,869,594,650(13.2%)
94년도	77,459,673,000	15,627,267,000(20.2%)	11,391,642,000(14.7%)
95년도	59,939,328,000	12,381,714,000(20.7%)	11,875,708,000(19.8%)

- 한정된 재원에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개발비 및 사회복지비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조직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연도별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

<표 4>

(단위 ; 원)

연도별	용역비 (연구개발비)			비고
	예산현액	결산액(집행비율)	잔액	
93년도	297,300,000	108,600,000(36.5%)	188,700,000	청소관리,기획관리
94년도	83,000,000	22,480,000(27.1%)	60,520,000	전산운영,회계관리,청소관리
95년도	159,709,000	46,361,000(29.0%)	113,348,000	기획관리,예산운영,전산운영,세정관리,회계관리,청소관리,

- 연구개발비의 70% 이상을 불용 또는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특히 청소관리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93년도에 2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2,335만원은 불용처리하고 1억 3,775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94년도에 다시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368만원을 불용처리하고 5,667만원을 사고이월하였다가 95년도에 이 금액을 전액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성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예산집행의 취지에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 30 -

-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제도인 바 용역을 의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구개발비를 다음다음연도까지 사고이월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 95년도 사고이월의 경우 동결기 공사 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工期의 장기화에 따라 원자재 값의 상승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예산손실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공기를 앞당겨 회계연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불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관별 불용액 현황>

<표 5>

(단위 : 원)

관 별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의회운영비	12,557,000	43,494,000	75,732,000
기획관리비	229,573,000	1,010,270,000	686,767,000
공 보 비	기획관리비에 포함	6,261,000	22,063,000
내무행정비	671,958,000	1,241,953,000	840,907,000
재무행정비	641,480,000	888,992,000	193,116,000
사회복지비	836,944,000	674,354,000	1,771,247,000
보건위생비	87,594,000	199,158,000	156,350,000
공원녹지비	194,899,000	33,544,000	6,288,000
청소사업비	공원녹지비에 포함	186,463,000	507,454,000
산업경제비	64,752,000	155,309,000	8,442,000
지역경제비	19,819,000	산업경제비에 포함	산업경제비에 포함
지역개발비	4,083,183,000	1,660,432,000	2,500,667,000
도로및치수사업비	3,372,153,000		
건설사업비		1,490,979,000	1,798,595,000
치수및하수사업비		5,809,000	9,675,000
교통관리비		10,448,000	6,295,000
문화및체육비	25,390,000	44,840,000	21,102,000
민방위비	81,049,000	19,537,000	22,512,000
지원및기타정비	1,355,345,000	476,403,000	863,462,000
합 계	8,002,230,600 (12.5%)	6,221,845,440 (8.9%)	7,011,616,887 (12.1%)

-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치수및하수사업비, 민방위비 등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분야인만큼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주민에게 혜택이 곧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전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32 -

- 특히 불용액이 기본급, 관서당경비, 여비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하여 특정비목에서 과다불용이 발생,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